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3.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 영 제74조의2에 따른 가상자산 매각 대행 의뢰서 및 가상자산 매각 대행 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6호의2 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3호 중 “개별소비(42)”를 “개별소비(47)”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쪽부터 제6쪽까지, 별지 제3호서식 제4쪽부터 제6쪽까지, 별지 제6호서식 제4쪽부터 제6쪽까지 및 별지 제7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이나, 동 신청서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3. 00.>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기준(제56조제2항 관련)

건당 감정평가금액	기준수수료
5천만원 이하	25만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5만원+(5천만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4만 5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9)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9만 5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8)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439만 5천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7)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89만 5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6)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189만 5천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5)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5,689만 5천원+(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4)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억 3,689만 5천원+(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3)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억 2,689만 5천원+(6,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2)
1조원 초과	3억 689만 5천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1)

비고: 관할 세무서장은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 형성요인 분석, 적용된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6. 3. 00.>

가상자산 매각대행 수수료율 기준(제79조의2제2항 관련)

구분	수수료율	최저 수수료
매각수수료	매각금액 x 2.6%	30만원

비고

1. 매각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채납자가 완납하거나 압류·매각대행의 해제에 따라 매각이 취소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안 내 말 씀

-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 휴대폰문자·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세액(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상담·불복·제보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납세자권익24 >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 불복]를 참고하거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개월까지)됩니다.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 2026년 7.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 1일마다 0.67%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100만원) 이상: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시어 납부할 금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②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100만원) 미만: 송달받은 당초 납부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할 금액(예시)]

- ◎ 세목별 고지세액 150만원(가산세 20만원 포함)을 납부기한 후에 납부하는 경우

-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세 대상금액 130만원)			
1일후~1개월까지	1,539,000	2개월후~3개월까지	1,556,420
1개월후~2개월까지	1,547,710	3개월후~4개월까지	1,565,130

- 2020년 이후 2026년 6월 30일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세 대상금액 130만원)

1일후	1,539,280	11일후	1,542,080	21일후	1,544,880
2일후	1,539,560	12일후	1,542,360	22일후	1,545,160
3일후	1,539,840	13일후	1,542,640	23일후	1,545,440
4일후	1,540,120	14일후	1,542,920	24일후	1,545,720
5일후	1,540,400	15일후	1,543,200	25일후	1,546,000
6일후	1,540,680	16일후	1,543,480	26일후	1,546,280
7일후	1,540,960	17일후	1,543,760	27일후	1,546,560
8일후	1,541,240	18일후	1,544,040	28일후	1,546,840
9일후	1,541,520	19일후	1,544,320	29일후	1,547,120
10일후	1,541,800	20일후	1,544,600	30일후	1,547,400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대상금액 100만원)

1일후~1개월까지	1,030,000	2개월후~3개월까지	1,045,000
1개월후~2개월까지	1,037,500	3개월후~4개월까지	1,052,500

-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고지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이용방법

-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 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체크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안 내 말 씀

-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시 휴대폰문자·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구분람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자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상담·불복·제보>불복청구>국선대리인 신청)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납세자권익24>납세자권익보호 소개>납세자권리구제 제도>불복]를 참고하거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5쪽)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 2026년 7.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 1월마다 0.67%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100만원) 이상 :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시어 납부할 금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100만원) 미만: 송달받은 당초 납부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할 금액(예시)]

- 세목별 고지세액 150만원(가산세 20만원 포함)을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는 경우

-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세 대상금액 130만원)

1일후~1개월까지	1,539,000	2개월후~3개월까지	1,556,420
1개월후~2개월까지	1,547,710	3개월후~4개월까지	1,565,130

- 2020년 이후 2026년 6월 30일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세 대상금액 130만원)

1일후	1,539,280	11일후	1,542,080	21일후	1,544,880
2일후	1,539,560	12일후	1,542,360	22일후	1,545,160
3일후	1,539,840	13일후	1,542,640	23일후	1,545,440
4일후	1,540,120	14일후	1,542,920	24일후	1,545,720
5일후	1,540,400	15일후	1,543,200	25일후	1,546,000
6일후	1,540,680	16일후	1,543,480	26일후	1,546,280
7일후	1,540,960	17일후	1,543,760	27일후	1,546,560
8일후	1,541,240	18일후	1,544,040	28일후	1,546,840
9일후	1,541,520	19일후	1,544,320	29일후	1,547,120
10일후	1,541,800	20일후	1,544,600	30일후	1,547,400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대상금액 100만원)

1일후~1개월까지	1,030,000	2개월후~3개월까지	1,045,000
1개월후~2개월까지	1,037,500	3개월후~4개월까지	1,052,500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고지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체크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텍스(www.cardrotax.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안 내 말 씀

1. 납부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상담·불복·제보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납세자권익24 >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 불복]를 참고하거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5쪽)

5. 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안내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최장 5년간) 됩니다.
6. 2026년 7.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 1월마다 0.67%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7.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8.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납부가능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 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체크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텍스(www.cardrotax.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각결정 통지

아래와 같이 매각결정을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공매재산을 취득
하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84조 및 제84조의2).

매수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채납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공매재산의 표시				
매수대금				
매수대금 납부방법		[] 전액납부		[] 차액납부
대금납부기한		년 월 일 * 매수대금을 차액납부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으며, 배분기일에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대금 납부 전에 채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채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결정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상자산 매각대행 의뢰

아래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을 의뢰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79조의2).

체납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매각재산의 표시		별지 목록과 같음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 가상자산 주소 (체납자 계정)				
이전할 계정				
매각예정일자				
입금할 계좌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 공매

제 목 [] 수의계약 대행 통지

[] 가상자산 매각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제74조 및 제74조의2).

체납자	성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u> ① 영 제74조의2에 따른 가상자산 매각 대행 의뢰서 및 가상자산 매각 대행 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6호의2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